

2010. 3. 9.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의안발의 서명서 1부.

2.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부. 끝.

본 결의장	()	결재	부의장
접수일시	2010. 3. 9. 16분	번호	자수
처리과	제천시의회	인정	국장

본 결의장	()	결재	부의장
접수일시	2010. 3. 9. 16분	번호	자수
처리과	제천시의회	인정	국장

발의자 : 김병룡 의원 (서명) (날인)

의 4 인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김영종	김영종	
김기태	9, 202	
김영장	(날인)	
김영섭	(날인)	
이종선	(날인)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1418
------	------

발의연월일 : 2010. 3. 9.
발 의 자 : 김병룡의원외 4인

1. 제안이유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에너지 관련 시책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3조).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의 책무, 사업자와 이용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6조)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4조)
- 공공부문·산업부문·건물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5조 ~ 안 제17조)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 확대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3. 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 첨부 1. 제정안 1부.
2. 관계법령 1부.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₆)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하

여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에너지이용자”(이하 “이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8. “공공부문”이란 제천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산업부문”이란 제천시 지역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건물부문”이란 제천시 지역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태양광주택”이란 주택의 옥상, 지붕등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택에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및 협력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제천시(이하“시”이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 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및 대형발전·송전시설 등의 시설이 입지할 경우 당해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협력) ① 이용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설치)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관掌한다.

1.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부제 운영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적용대상은 건물내부 및 주택 단지 내에 공공용 용도의 이용편의 시설 목적의 설비에 한한다.(승강기, 복도, 보안등, 주차장, 놀이터 등)

제18조(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이용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에너지기본법

[시행 2009. 5. 1] [법률 제9372호, 2009. 1.30, 일부개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09. 1.30] [법률 제09373호, 2009. 1.30, 일부개정]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9>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09680호, 2009. 5.2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
8.2.29, 2009.5.2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
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
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다. 풍력
 - 라. 수력
 - 마. 연료전지
 -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해양에너지
 -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 자. 지열에너지
 - 차. 수소에너지
 -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
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
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5호, 2009. 5.21, 타법개정】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 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0조에서 이동 <2008.3.21>】